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25

발의연월일: 2024. 7. 9.

발 의 자:조정식・민병덕・이병진

정성호 • 백승아 • 김성환

이재관 · 정을호 · 김재원

염태영 · 노종면 · 용혜인

박홍근 • 이성유 • 이해식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을 하는 등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강간을 의도로 마약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의사실현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경우 이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에 해당되어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특수강간죄로 가중처벌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런데 마약을 이용하여 사람을 항거불능상태로 만들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형법」상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보다 더 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이 법에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 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적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한 강간등의 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등)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및 같은 법 제5조의2의 임시마약류를 이용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조의2(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등)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및 같은 법 제5조의2의 임시마
	약류를 이용하여 「형법」 제2
	9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